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9096 제출연월일: 2025. 3. 19.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 교육) ① • ② (생 략)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 교육의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비용 건복지부렁으로 정하고, 제2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부령으로 정한다.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